

『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2월 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2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2월 20일

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환경안전과장 이인재

나. 제안이유

- 초기장우에 도로내에서 발생하는 영양염류가 낙동강에 유입될 시
녹조현상 발생 등 수질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구미시설공단
위탁을 통하여 초기우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○ 위탁재산현황

- 위 치 : 구미 국가4단지내(붙임)
- 사 업 비 : 43,000천원(시비 43,000천원)
- 규 모 : 초기우수처리시설 (장치형 3기)

위 치	용 량	처리면적 (ha)	체류시간 (분)	형 식
NO.1	1.128m³/sec (2,300m³)	127.72	30	Downstream Defender
NO.4	0.354m³/sec (750m³)	44.57	25	
NO.5	0.438m³/sec (850m³)	57.50	20	

○ 운영전출금 내역 : 연 43,000천원

(단위: 천원)

계	인 건 비	공공요금	수질분석비	시설유지비	일반운영비	비고
43,000	30,766	1,980	3,484	1,541	5,229	

라. 참고사항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
○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용 우

□ 본 ‘구미시 국가4단지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’ 은,

○ 초기강우시 도로 및 공장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낙동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우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낙동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및 조례는 시설관리 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, 따라서 효율적인 낙동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초기우수처리시설의 전문기관 위탁관리·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